

불법배출시설 표지판(제9조 관련)

불법배출시설	
①소재지:	
②상 호 :	③대 표 자 :
④위 반 사 항:	
⑤조치사항:	
위 시설은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불법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철거명령을 받은 시설입니다.	
년 월 일	
시·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[인]	
이 표지판을 제거하거나 훼손한 자는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	

80cm

100cm